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규약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규약(안)

2016. 06. 22 제정
2018. 09.18 개정
2019.01.30. 제.개정
2020.01.22 제.개정
2020.02.12. 체육회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 ① 이 규약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4조의 규약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② 울산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라 한다.(이하 "협회"라 한다.) 영문으로 "UL SAN TAE KWON DO ASSOCIATION(약호" UT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 ① 협회는 태권도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육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울산광역시 체육발전과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협회는 태권도 종목을 소관 하는 단체, 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태권도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울산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 ① 협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태권도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태권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태권도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태권도종목의 구·군 협회의 지도와 지원
 5. 태권도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태권도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태권도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태권도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사업
 9. 태권도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태권도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태권도에 관한 홍보, 계몽,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2.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사업
 13. 국제 교류 사업
 14. 일선 태권도장 관리
 15.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6. 태권도 시범 공연단 사업
 17. 그 밖의 태권도 종목 진흥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협회는 구, 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태권도 보급 및 대회개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한다.
- ③ 협회는 제1항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조 직

제5조(조직)

- ① 구, 군 협회는 협회의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협회에 대한 구,군 협회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7조를 준용한다.

제6조(구, 군 협회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구, 군 협회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주관 및 후원
- ②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2.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 ③ 구, 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 군 협회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협회에 보고
 3. 제 부담금의 납부
 4. 구, 군 협회의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 시 협회에 보고
-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규약,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은 회비의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협회 도장단체등록을 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 심사 추천료 및 별도의 시도협회 심사 집행료를 일정액을 납부한다.
 4. 협회의 회원의 회비는 심사 1인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등)

- ① 협회는 구, 군 협회의 가입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또한 탈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

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② 협회 회원의 가입은 구, 군 협회의 가입을 필한 수련단체(도장)대표, 경기단체(연맹)대표 및 체육동호인(스포츠클럽, 연합회)조직은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확정된다. 또한 탈퇴는 수련단체(도장)대표는 해당 구, 군 협회에 필하고, 경기단체(연맹)대표 및 체육동호인(스포츠클럽, 연맹, 연합회)조직은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 ③ 구, 군 협회의 가입 및 탈퇴는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에 가입한 구, 군 협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의결로써 탈퇴케 한다.
- ⑤ 회원의 수련단체(도장)대표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련도장이 폐쇄되거나, 구, 군청에 도장 폐업 신고와 동시에 회원자격도 상실된다.(도장등록 관리 규정에 준한다.)
- ⑥ 회원 수련단체(도장)대표 및 경기단체(연맹) 및 체육동호인(클럽, 연합회)조직은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유포 등
 - 2. 협회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모욕 등
 - 3. 관계기관 및 상위단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한 자.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 협회의 구, 군 태권도협회의 장
 - 2. 협회에 등록된 연맹, 연합회의 장

초등연맹:1명, 중 고연맹:1명, 여성연맹:1명, 대학연맹:1명, 일반부(실업):1명

-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1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의2 1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 연맹, 연합회를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협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2. 구·군 회원단체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중요사항
- ⑦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협회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 ⑧ 연맹, 연합회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다음번 총회 개천 전일까지 대의원지위를 가진다. 다만,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⑨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 군 체육회의 인준사항 등 변경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지체 없이 시체육회에 교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⑩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 하여야 한다.

1. 협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제25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0조(의장) 협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② 강등 및 제명 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회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협회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강등 및 제명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과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5조의 1(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의 2(상임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협회는 총회 의결과 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7명이상에서 15명 이하로 구성 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부의한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 개정,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하여야한다.
-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 의 소집)

-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25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임 원

제19조(임원)

-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 ③ 협회의 임원은 협회에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다.

④ 협회의 자문기구로 명예회장과 원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협회는 새로운 회장 선출 방법을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심판,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단체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장 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협회별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시체육회의 회원총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③ 협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회원 총목단체, 시체육회 등 체육

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총목단체, 시 체육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회장의 사고 또는 결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결위된 경우에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1. 등록선수 출신자
2.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인사
4. 여성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 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 ⑥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⑦ 협회의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 ① **협회의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단,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 스켈 레톤 및 수중. 핀 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협회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협회의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 ②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 할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및 다른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⑨ 구·군 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 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

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협회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무조작, 편파판정,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군구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6. 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 7.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④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협회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 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시체육회의 스포츠평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1. 체육회로부터 임원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 2. 제27조에 해당하는 때
 - 3. 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9조(규약 승인)

- ① 협회는 시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협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 ② 시체육회는 협회가 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대한태권도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 ③ 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 ① 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시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

- 여야 하며, 대한태권도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구, 군 태권도협회

제31조의 1(지위 및 명칭)

- ① 구, 군 협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구, 군 단위를 대표하며, 명칭은 협회의 명칭을 준용하여 울산광역시 ○○구(군)○○○협회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구, 군 협회는 구, 군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 군 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 ③ 구, 군 협회는 구, 군 협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구, 군 동호인 클럽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1조의 2(구, 군 협회의 총회)

- ① 구, 군협회의 대의원은 등록팀, 종목동호인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② 구, 군 협회는 제1항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 ③ 구, 군 협회는 제 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 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구, 군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 ⑤ 구, 군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구, 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구성이 어려워 구, 군협회에서 별도의 대의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 군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31조의 3(총회의 소집)

구, 군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군 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 4(구, 군 협회의 규정 등)

구, 군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 군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의 5(임원 인준 등)

- ① 구, 군 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 군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 군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 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의 6(규정 승인)

- ① 구, 군 협회는 제31조의 4에 따라 구, 군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 군 협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 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 ② 구, 군 체육회는 구, 군 협회가 규약의 제, 개정에 대하여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 할 수 없다.
- ③ 구, 군 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규정 등 해당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 7(이의신청 및 감사)

- ① 구, 군 협회는 협회에 구, 군 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 군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 ② 구, 군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 군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감사 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감사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 군 협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 8(구, 군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요구)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 군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군 체육회에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군 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 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 8 장 각종 위원회

제32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 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④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스포츠공정위원회)

- ① 협회는 해당 협회 및 구, 군 협회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협회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시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제2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2조 및 제33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
 - 3. 기금
 -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회원회비
7. 심사시행수수료
8. 그 밖의 수입금(등록비, 각종 수수료, 기타)

제37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8조(재산의 관리)

-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체육진흥 및 공공

의 비영리 목적)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0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편성 및 결산)

- ① 협회는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견서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등)

-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의 1(시체육회의 감사)

- 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와 구 군 협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 감사할 수 있다.
- ②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시체육회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협회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협회에 이를 요

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회는 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43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한다.

제 10 장 사 무 국

제44조(사무국)

-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단, 상근임원은 전결규정에 준한다.)
- ④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협회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국장 및 직원을 말한다.)은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5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1 장 보 칙

제46조(해산)

-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경우에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 및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7조(규약변경)

- ① 협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의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 시체육회가 협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과 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규정 제·개정 등)

- ① 협회는 이 규약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 ③ 협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제49조(규정의 해석)

- ①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협회 규약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규약과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② 협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제한사항) 협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및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대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경영공시)

-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 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은 시행 전 (구)울산광역시 체육회의 가맹경기 단체와 (구)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 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울산광역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③ 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20조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협회 임원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 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 ⑤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 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6조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울산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 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 ⑦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울산광역시체육회의 가맹단체와 (구)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울산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⑧ (구)울산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 할 당시 제8조 1항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 받은 협회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 ⑨ 구, 군 협회의 회장 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부칙 <2017.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0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협회 규약 제정 부칙(2016.03.21.)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